

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 조정하고, 동 위원회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사전 승인 등 관련 법에 의한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 위원을 60인이내에서 70인이내로 증원 조정함 (제3조제1항).
- 나. 소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(안 제7조제2항).
- 다. 연구보조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 (안 제10조 삭제).

개정조례안 : 별 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발췌서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3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 첨

- 현행 조례 전문
- 200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

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60인이내”를 “70인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5인내외”를 “5인이상 10인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이 순 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획담당 김 남 립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근 수 (행정 204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 (구성) ①----- -----70인이내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소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소위원회는 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 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5인이상 10인이내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 (연구보조원) ①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연구보조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삭제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시행령

[일부개정 2003.4.4 대통령령 제17953호]

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5.7.1, 1999.12.31>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[일부개정 2003.4.4 대통령령 제17953호]

제3조 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청소·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0.2.14>